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25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복기왕 · 민병덕 · 김남근
박용갑 · 정준호 · 김현정
김기표 · 박정현 · 문진석
김우영 · 최혁진 · 서영교
장종태 · 남인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채권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순위채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가 확보 중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임차인의 최초 피해자 접수 시점의 자료로서,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 변동(선순위 채권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31조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아

니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요청 기준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및 제16조에”를 “, 제16조 및 제29조의2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 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신 용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 대인의 신용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⑥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의 신</u>

	<u>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 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요청 기준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31조(비밀준수 의무)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준수 의무) ① ----- ----- -----, 제16조 및 제29조의2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